

OG3

## 치악산 국립공원의 자연보존지구 지정현황으로부터 본 보전대책

백미혜<sup>\*</sup>, 이미정, 김성희, 손주희, 조태동  
강릉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1. 서 론

#### 1.1. 연구의 목적

치악산은 우리나라의 등줄인 태백산맥의 오대산에서 분기하여 서남향으로 향하고 있는 차령산맥의 서쪽으로 뻗으며 마지막에 솟아오른 웅장한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주봉인 비로봉(1,288m)을 중심으로 남으로 향로봉과 남대봉, 북으로 매화산을 잇는 표고 1,000m 이상의 고산준령을 따라 많은 산봉과 계곡이 입지하여 남북방향의 능선을 축으로 서고 동저형의 경사를 이룬다. 또한 주변지역에 산악형, 내륙형, 내수면형 등 자연자원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강원권의 특색있는 자연문화·탐방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치악산 국립공원은 매년 40~50만이 넘는 탐방객들이 찾고 있으며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주2일 휴무제는 향후 탐방객들의 계속적인 증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탐방객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무질서한 공원이용, 쓰레기 투기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문화자원에 대한 낙서, 담암에 인한 나무뿌리 손실, 무분별한 자원채취 등 인위적인 해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생태계 및 환경여건 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그에 대한 관리방안 및 개선방안을 구축하여 치악산 국립공원 고유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 1.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2003년 9월 1일부터 2003년 12월 1일까지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논문, 인터넷자료 등을 실시하였고, 2003년 10월 4일과 10월 18일 2차례에 걸쳐 치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방문 및 현장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발급한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도를 용도지구상 자연보존지구와의 관계과 자원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Adobe Photoshop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verlap 시켜, 자연보존지구와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과의 관계, 자연보존지구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의 관계에 대하여 AutoCAD 200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면적을 산출하였다.

## 2. 본 론

### 2.1. 자연보존지구와 녹지자연도

치악산 국립공원의 전체면적 181.827km<sup>2</sup>중 자연보존지구는 84.218km<sup>2</sup>(45.9%)이 지정되어 있으며,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은 105.9km<sup>2</sup>(58.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연보존지구에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을 overlap한 경과, 현재 지정된 자연보존지구보다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의 면적이 21.7km<sup>2</sup>만큼 더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은 “녹지보전을 위한 잠정기준(1994.6.20,환경처)”을 근거로 한 보호대상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현행 자연보존지구보다 넓게 분포한 21.7km<sup>2</sup>(12.4%)에 대한 보전측면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2.2. 자연보존지구와 생태자연도의 관계

치악산 국립공원의 전체면적 181.827km<sup>2</sup>에서 최근 작성된 생태자연도 1등급은 120.2km<sup>2</sup>(66.2%)로서 현행 자연보존지구보다 36.1km<sup>2</sup>(20.3%)가 생태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이 양호한 면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치악산 국립공원의 전체면적 중에 식물상과 생태계가 매우 양호한 면적이 약 66%점유하고 있으나, 현행 자연보존지구의 지정현황은 앞서 녹지자연도와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84.2km<sup>2</sup>(45.9%)만이 지정되었고, 나머지 36.1km<sup>2</sup> (20.3%)의 면적이 자연보존지구보다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33조 2항(2001.4.7,환경부)”을 근거로 보전 및 복원대상이므로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과 마찬가지로 보전적 측면에서 현행 용도지구를 개정하여 보전체계의 수립이 요구되는 바이다.

### 2.3. 용도지구와 자원분포현황

자연보존지구는 보호·보존을 위한 것으로 문화자원은 총 27개가 분포되어있는데 이 중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4개소는 모두 자연보존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자연보존지구의 경계와 매우 근접해 있다. 자연보존지구 안에 분포해있는 문화자원은 제도적장치 속에 지속적으로 보존되겠지만 자연환경지구에 포함한 3개소는 어떠한 개발이 진행될 경우, 개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 역시 보전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3. 결 론

본 연구 결과, 치악산 국립공원은 식물상을 포함하여 약 60%가 생태적으로 안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용도지구상 자연보존지구는 84.218km<sup>2</sup>(45.9%)로서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과, 생태자연도 1등급의 분포를 근거로 보면 약 15%가 자연보존지구 외에 점유하고 있어 자연공원법상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치악산 국립공원은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자원의 분포로부터 보전대상지역의 확대 지정에 대한 가능성의 파악됨으로 다음과 같은 보전대책을 제안하

고자 한다.

우선은 정확한 자연생태계 및 식생분포 등의 기초자료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후에 보호계획의 단계를 정하고 보호되어야 할 자원들은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의 개정 및 용도지구를 세분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국립공원의 보호계획제도에서는 특별지역과 보통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보존지구를 생태보호지구, 문화사적보존지구로 나뉘었으며, 환경지구는 특별경관지구와 일반관제구로, 미국의 경우도 보존지구를 자연지역과 사적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전체계는 단순히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로 나뉘어져 있어 각 등급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자원의 가치를 근거로 용도지구를 개선하고 특히 보전적 측면에서 자연보존지구의 세분화(조태동, 1997)를 실시해야 한다.

#### 인용 및 참고문헌

치악산 국립공원 홈페이지([www.npa.or.kr](http://www.npa.or.kr))

김홍균, 자연공원의 보전과 개발, (<http://genlee1.hihome.com/자연공원.hwp>)

조태동 · 이명우 · 김진선, 1997,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제 개선에 관한 연구, 19 6~201쪽, The Journal of Planners Association, Volume 32, No,5, Oct.,1997.

오장근, 2001, 자연환경보전과정공원관리반,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생태연구소, 26쪽

환경부, 2002, 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안(2003~2012), (<http://kremo.me.go.kr/board/knew/20030716cum.hwp>)

환경지리정보(<http://ngis.me.go.kr/egis/intro.asp>)

조정건, 1998, 국립공원, <http://nature.skku.ac.kr/~simba/land/jungun.htm>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문화재보호법 제16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http://www.mct.go.kr/uw3/dispatcher/korea/laws/law.html>)

인터넷 사이트 나무와 조경(<http://www.namunet.co.kr/>), 외국의 국립공원

(<http://www.namunet.co.kr/db/pds1/down/%BF%DC%B1%B9%C0%C7%B1%B9%B8%B3%B0%F8%BF%F8.hwp>)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http://www.me.go.kr))